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2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서 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군사법원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군사법원법」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각 군 본부의 법무실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의 운영을 삭제하며, 해병대사령부의 경우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무실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을 수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 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

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육군본부 직제」의 개정)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군사법원 및 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의2.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

제2조(「해군본부 직제」의 개정)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군사법원 및 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의2.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

제3조(「공군본부 직제」의 개정)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군사법원 및 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호의2.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

제4조(「해병대사령부 직제」의 개정)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군사법원”을 “전시 군사법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법무실장) ① (생략)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 1. <u>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</u> 1의2. <신 설> 2. ~ 9. (생략)	제7조(법무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. 1. <u>군</u> ----- 1의2. <u>전시 군사법원의 운영</u> 2. ~ 9. (현행과 같음)

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법무실장) ① (생략)	제7조(법무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	② ----- ----- --.
1. <u>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</u>	1. <u>군</u> -----
1의2. <신 설>	1의2. <u>전시 군사법원의 운영</u>
2. ~ 9. (생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
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법무실장) ① (생략)	제7조(법무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	② ----- ----- --.
1. <u>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</u>	1. <u>군</u> -----
1의2. <신 설>	1의2. <u>전시 군사법원의 운영</u>
2. ~ 9. (생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
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법무실장) ① (생략)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. 1. <u>군사법원</u> 및 군 검찰의 운영 2. ~ 9. (생략)	제8조(법무실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<u>전시 군사법원</u> 및 군 검찰의 운영 2. ~ 9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-6556